

의안번호	2209819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2.28.
추계번호	25B06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6 (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 산림청장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해외에서 목재생산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제1항) -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목재생산업체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제2항) -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가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산림훼손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u>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u> (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의6 (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9조의6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수입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가 제시한 개선사항의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실사에 따른 비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행법 제19조의2¹⁾에 따라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19조의3²⁾에 따라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사업을 통해 비영어권 국가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대상으로 동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사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13억 7,100만원임

1) 제19조의2(수입신고)

-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와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참고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입목재 합법벌채 서류검사 건수 및 적합률에 관한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수입목재 합법벌채 서류검사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검사건수(건)	48,007	49,760	44,078	45,623	52,235
적합률 (%)	94	93	94	94	96

자료: 산림청

- 안 제19조의6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현지실사가 필요한 건수 및 현지실사 단가 산출을 위한 현지실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이 필요하나, 현지점에서는 현지실사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은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